

수상레저종합보험 안내자료

1. 가입대상 : 수상레저안전법에 규정한 레저기구

2. 가입담보

- 수상레저기구 배상책임(대인 - 의무가입사항, 대물)
- 수상레저 상해담보(승선인원필수입력) 사망후유장해 - 탑승자보장내용
- 특약

- | |
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a. 치료비담보특별약관 - 탑승자가 요트안에서 부상시 지급 b. 이용자 이외 제3자 확장담보 특별약관 - 이용자 이외 탑승하지 않은 사람부상 및 사망에 대한 보장 c. 관습상의 비용담보 특별약관 - 이용자(3자포함) 위로금/조의금,이용자 친족의 교통 및 숙박비, 식대 지급 d. 구조비 담보 특별약관 - 이용자, 제3자를 구조 또는 수색하기 위한비용 |
|--|

위와 같은 보장 담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및 자차 개념에 수상레저기구담보는 인수하지 않습니다.
(운행하는 요트 자체에 대한 담보는 가입이 불가합니다.)

3. 가입조건 : 개인용, 사업용(영업용), 업무용(영리목적이 아닌 정부나 공공기관의 고유활동시)

- 1년에 단 1회라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사업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가입해야 함.
- 개인용의 경우 수상레저기구 배상책임 대물담보 가입 불가함.
- 동호회나 비영리 단체라 할지라도 영리목적으로 수상레저기구 이용시 사업자용으로 구분함.

가입비교 (비교예시 : 12인승 동력 요트 기준)

구분	개인용	사업자용	업무용	
1) 수상레저기구 배생책임 (기본담보)				
대인	1억	1억	1억	
대물	X	1억	1억	
2) 수상레저 상해담보				
사망후유장해	1억	1억	1억	
3) 특별약관				
치료비담보	1백(인) / 1천(사고) / 10만	1백(인) / 1천(사고) / 10만	1백(인) / 1천(사고) / 10만	
제3자확장담보	1억(인) / 1억(사고) / 10만	1억(인) / 1억(사고) / 10만	1억(인) / 1억(사고) / 10만	
관습상의비용담보	30만원/인	30만원/인	30만원/인	
구조비담보	5백만원	5백만원	5백만원	
보험료	1) 2) 3)	₩ 500,500	₩ 1,488,500	₩ 1,018,200
	1) 2)	₩ 306,500	₩ 918,500	₩ 448,200
	1)	₩ 99,400	₩ 581,500	₩ 111,200

- 1) 은 의무보험으로 필수가입, 2), 3)은 추가 보장이므로 선택 가입 가능
- 수상레저종합 보험 가입을 위한 준비사항
 - 1) 등록증서(소유주 및 승선인원 확인용, 안전검사증으로 대체가능)
 - 2) 안전검사증(동력선의 경우 필수)
 - 3) 수상레저사업자등록증(사업자가 있을경우)
 - 4) 소유주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
- 가입신청서 작성시 필수 확인사항
 - 1) 1대 이상에 수상레저기구 소유시 일부만 가입불가(전체 가입시만 인수)
 - 2) 사업자용 수상레저기구를 타기구를 끄는 용도로 사용시 타기구 견인용 표시
 - 견인되는 기구는 별도로 담보로 가입해야 함(본기구와 동일한 정보제공)
 - 3) 승선 정원수 / 기구명 / 운행지역 / 근로자의 탑승유무(피보험자의 고용인)
 - 4) 각 기구의 배상담보는 일괄적으로 동일한 가입금액(보상한도액)을 적용